

연번	조합명	설립인가일	휴면지정일	해산명령 사유
5	중부육류사업협동조합	2009.06.30	2016.09.13.	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(활동재개 미신청)
6	한국전시컨벤션 사업협동조합	2007.01.23	2016.08.04.	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(활동재개 미신청)
7	한국출산유아 사업협동조합	2008.02.18.	2016.08.04.	휴면조합 지정후 1년 경과 (활동재개 미신청)

2. 해산명령일 : 2017. 12. 14.(목)

3. 기타사항
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(휴면조합) 제1항에 의거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은 관보 게재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,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청문절차 없이 해산을 명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문 의 :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(☎ 02-2133-5241)

우)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-2523호

도시관리계획(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공고

- 동작구 상도동 183-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(준공공 임대주택)사업 -

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83-26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(준공공 임대주택)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17년 12월 21일

서울특별시장

I. 열람 기간 : 2017. 12. 22. ~ 2018. 1. 4.

II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TF팀(☎02-2133-4936)

I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변경 결정 사항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
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 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기정	①	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	82,985.0	-	82,985.0	1997.02.14. (서울시고시 제1997-14호)	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 없음)

가. 용도지역 : 변경 없음

- 용도지역 총괄 조서(변경 없음)

구 분	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82,985.0	-	82,985.0	100.0	
주거 지역	소계	70,671.0	-	70,671.0	85.2	
	제1종일반주거지역	1.0	-	1.0	0.0	도로 및 광장
	제2종일반주거지역	23,686.0	-	23,686.0	28.6	도로 및 광장 포함
	제3종일반주거지역	18,584.0	-	18,584.0	22.4	
	준주거지역	28,400.0	-	28,400.0	34.2	
상업 지역	소계	12,314.0	-	12,314.0	14.8	
	근린상업지역	12,314.0	-	12,314.0	14.8	

-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 없음)

구분	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621.0	-	621.0	100.0	
주거지역	준주거지역	621.0	-	621.0	100.0	

나. 용도지구 : 변경 없음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지구명	지구세분	위치	면적 (㎡)	연장 (m)	폭원 (m)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①	미관지구	일반 미관지구	노량진동240-1 ~ 대방동 400-5	65,280 (346.3)	2,720 (31.4)	양측 12	1982.04.22. (서고시 제164호)	장승배기로 상도로

※ ()는 대상지내 면적 및 연장임
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 없음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 없음)

가.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
-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 없음)

가구번호	면적(㎡)	위치	면적(㎡)	계획내용	비고
b	9,454.0	상도동 183-26	621.0	-	

※ 가구번호 A, B, C, a, b(대상지 제외), c, d : 기재 생략, 변경 없음

나. 필지의 교환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
다.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
2. 건축물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.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

- 건축물의 불허용도(변경 없음)

구 분		불허용도(전층) [건축법 시행령 별표1]	비 고
기정	공통	•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 골프연습장 •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 골프연습장 / • 제17호 공장 • 제18호 창고시설 / •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•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	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
	B	•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•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•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(군사시설 제외) / • 제28호 장례식장	준주거지역

• 건축물의 권장용도(변경 없음)

구 분		권장용도 [건축법 시행령 별표1]		비 고
기정	2	전층 (1층 제외)	- 제34호 제1·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, 금융업소, 사무소, 학원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, 공연장 -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- 제11호 노유자시설 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	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
		저층 (1층)	-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, 나, 라목 -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, 라, 아, 자목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, 공연장 -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	

※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, 나, 라목

가. 식품·잡화·의류·완구·서적·건축자재·의약품·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(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)에 해당용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㎡ 미만인 것

나.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 음료·차·음식·빵·떡·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(제4호너목 제조업소,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리 등을 위한 시설 또는 제17호 공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)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 미만인 것

라.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, 조산원, 안마원,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·치료 등을 위한 시설

※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, 라, 아, 자목

가. 공연장(극장, 영화관, 연예장, 음악당, 서커스장, 비디오물감상실, 비디오물소극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)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 미만인 것

라. 서점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)

아.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 음료·차·음식·빵·떡·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(제4호너목 제조업소,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리 등을 위한 시설 또는 제17호 공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)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 이상인 것

자. 일반음식점

• 건축물의 지정용도(신설)

구 분		지정용도	비 고
신설	I	- 공동주택^{주1)} (주거복합) ※ 단, 지상1층은 비주거용도 설치	상도동 183-26에 한함

주1) 공동주택은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항제2호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한하며,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

•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-	- 지정용도 신설 - 상도동 183-26 : 공동주택^{주1)} (주거복합)	「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“상도동 183-26” 필지에 지정용도 신설

주1) 공동주택은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항제2호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한하며,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

나.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

1) 건폐율 계획(변경)

- 건폐율 계획

구 분	계획내용		비 고
	기정	변경	
준주거지역	60% 이하	66% 이하	상도동 183-26에 한함

-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-	• 건폐율 변경 - 기정 : 60% 이하 - 변경 : 66% 이하	•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원활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 12조제4항에 의거 “상도동 183-26”에 한하여 건폐율을 법정상한(70%) 이하인 66% 이하로 완화

2) 용적률 계획(변경)

- 용적률 계획

구 분			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상한용적률	비 고
기정	준주거	간선변	300% 이하	360% 이하	400% 이하	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」 제7조 적용
변경			• 기본용적률 : 500% 이하		법정 이하 ^{주)}	상도동 183-26에 한함

주) 상한용적률은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

- 용적률 적용기준(의무사항)(신설)

구 분		적용기준	완화내용	비고
공공기여율		• 부지 면적의 6%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	기본용적률 500% 이하 부여	• 상도동 183-26에 한함 •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
주택 건설기준	비주거비율	• 15% 미만(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)		
	주택규모	• 공공임대주택 : 전용 45㎡ 이하 • 민간임대주택 : 전용 60㎡ 이하		

구 분		적용기준	완화내용	비고
건축물 형태	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	·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,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, 에너지 효율 건축물,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		
주민 공동시설	커뮤니티시설	· 주민공동이용시설 미대상 규모인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 를 위해 100㎡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(지상 1층 50.7㎡, 지하 1층 53.1㎡ 계획)		

※ 「서울특별시 역사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준용

※ 「서울특별시 역사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3-4-10에 의거 커뮤니티시설 층별 면적 분할 설치 가능

•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-	· 용적률 변경 - 지정 : 기준/허용/상한 : 300%/360%/400% 이하 - 변경 : 기본/상한 : 500% 이하/법정 이하	· 역사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'상도동 183-26'의 용적률 체계를 「서울특별시 역사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내 준주거지역 기준을 준용하여 변경

• 용적률 적용기준(공통사항)

<용도지역 상향된 경우('91.5.11. 이후 변경)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>

구 분	내 용		비 고
	기정	변경	
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	· 용적률 중 주거부분 ^{주1)} 의 허 용용적률은 250% 이하 적용	· 주거비율 제한 없음	· 상도동 183-26에 한함

주1)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(아파트), 노인복지주택을 말함

–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-	·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('91.5.11. 이후)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변경 -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주거비율 :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% 이하 → 주거비율 제한 없음	· 역사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상도동 183-26의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(1991. 5.11. 이후)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을 「서울특별시 역사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내 용적률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변경

<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상한용적률 배분 >

－ 기정

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상한용적률 배분	
구 분		주거건립가능	비주거 건립
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		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$\times \alpha / \beta$	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$\times (\beta - \alpha) / \beta$
		α :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, β : 상한용적률	

－ 변경

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상한용적률 배분	
구 분		주거건립가능	비주거 건립
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		주거비율 제한 없음	비주거비율 제한 없음

－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-	·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상한 용적률 배분기준 변경 - 주거건립가능 :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$\times \alpha / \beta$ → 주거비율 제한 없음 - 비주거 건립 :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$\times (\beta - \alpha) / \beta$ → 비주거비율 제한 없음	·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상도동 183-26의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(1991.5.11. 이후)의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상한 용적률 배분기준을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내 용적률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변경

3) 용적률 인센티브계획(변경 없음)

다.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

• 높이계획(변경 없음)

구 분			최고높이	비 고
기정	준주거지역	상도로변	72m 이하	

라. 건축물 배치 및 형태·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
- 건축선에 관한 사항(변경 없음)

구 분	적용지역	계획내용	비 고
기정	건축 한계선	· 간선도로변 (상도로, 장승배기로)	· 보도부속형 조성 (가로변 보행공간 확보)
		· 이면도로변	· 차도부속형 조성 (이면부 보행공간 확보)
		· 공공보행통로변 지정	· 대지내 보행공간 확보
			· 결정도 참조

-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(변경 없음)

마. 공공기여 계획(신설)

구분	기본용적률	공공기여율	공공기여계획	비고
공공임대주택	500% 이하 (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없음)	부지 면적의 6% 이상 ^{주1)} (37.26㎡ 이상)	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6.17% (38.33㎡)	상도동 183-26에 한함

주1)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3-2-2 적용

※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,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

3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

-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(변경 없음)

구 분	위 치	계획내용	비 고
전면공지	· 간선도로,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으로 확보	· 인도/차도 부속	·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조

-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(변경 없음)

구 분	적용지역	계획내용	기정	변경
차량출입 불허구간	· 상도로변 · 장승배기로변	· 주요 간선도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· 교차로에 면한 획지의 경우 교차로에서 10m 이내에 주차출입구 설치 불허	폭원 20m 이상 간선도로변 (불허구간 확대)	-
공공보행통로	· 주요가로 및 이면주거지와 보행흐름 연계 필요구간 - 상도동 183-26 남측 조성	·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는 보행공간 으로 지정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,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	1개소 (B=3m) ※ 대상지 2m 폭원 조성	-

※ 결정사항의 위치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참조